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강득구 · 최혁진 · 황운하
박홍근 · 서삼석 · 박홍배
김상욱 · 장종태 · 위성곤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59조의7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1(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제3호의5 중 “제59조의7제6항”을 “제59조의7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 ----- ----- <u>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u>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u>경우에는</u>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u>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u> ----- ----- -----.
1. ~ 22. (생 략) <u><신 설></u>	1. ~ 2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

<신 설>

④ ~ ⑦ (생 략)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 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 · 시간 ·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 · 군 ·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
-----제6항-----
-----제7항 및 제8항-----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4항-----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제86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개정법률

제59조의21(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
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
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
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생략) ④·⑤ (생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략)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 7. (생략) ④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제4항----- ---제6항----- ----- -----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59조의7제7항----- ----- ----- 3의6.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